

## 1. 개정이유

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과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「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맞추어 「국가첨단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을 개정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정 절차만 소관하는 지정위원회를 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 절차 모두 소관하는 평가위원회로 변경 (안 제3조제2항제2호, 제7조제1항~5항 등)
- 나. 지원사업 선정 후 지정하도록 되어있던 지침 규정을 법 규정 상 절차와 같이 지정 후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순서 변경 (안 제3조제2항제1호~2호, 제7조, 제9조 등)
- 다.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등 현행화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     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    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“관계부처”라 함은 <u>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45조</u> 따라 특성화대학 등 <u>지정</u> 을 위하여 협의하는 <u>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 등을 말한다. | 2.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<u>국가첨단전략산업법</u> <u>시행령 제45조에</u> -----<br><u>의 지정 및 지원</u> 을 위하여 협의하는 <u>중앙행정기관</u> -----<br>-----. |
| 3. “신청서”란 「 <u>국가첨단전략산업법</u> 」 제37조 특성화대학 등으로 <u>지정 및 지원</u> 을 받으려는 자가 <u>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</u> 말한다. | 3. “ <u>신청기관</u> ”이란 <u>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1항에</u> 해당하는 기관 중 <u>특성화대학 등으로</u> 의 <u>지정 및 지원</u> 을 받기 위하여 <u>신청한 기관</u> 을 말한다.         |
| 4. “통합사무국”이란 <u>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</u> 시행령 <u>제52조제6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<br>----- <u>제52조제1항제6호</u> 에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호에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  
및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  
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 
말한다.

5. (생 략)

6. "전문기관"이란 관계부처 및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사  
업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  
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  
정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통합사무국) ① 통합사무국  
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 
제52조제6호 및 「산업기술혁신  
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  
업기술진흥원으로 정한다.

② 통합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  
무를 수행한다.

1.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 
신청서 접수 및 검토

2.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위원회  
운영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산업  
통상부 -----  
-----  
-----대행하도록-----  
-----.

제3조(통합사무국) ① -----  
----- 제52조  
제1항제6호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지원 신청서 접수

2. ----- 지정 및 지원을  
위한 평가위원회 운영

3. ~ 4. (생 략)

5. 그 밖에 관계부처 및 산업통  
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 
정하는 업무

제4조(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 
분야) ①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 
지원분야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 
법」 제9조에서 정하는 국가첨단  
전략산업분야로 한다.

제5조(특성화대학 등 신청요건) ①  
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 지원  
가능한 기관은 「국가첨단전략산  
업법」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 
대학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.

② (생 략)

1. (생 략)

2. 신청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  
등을 지정 및 지원사업을 전담  
하는 조직을 설치하고, 사업총  
괄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  
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3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산업통상부---  
-----  
-----

제4조(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분  
야) ① -----  
-----제2조  
제2호-----  
-----.

제5조(특성화대학 등 신청요건)

<삭 제>

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갖추어야 ---.

3. (생 략)

4. 그 밖에 특성화대학 등 사업  
수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  
원부 및 관계부처에서 정한 사  
항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 
및 신청) ① 행정절차의 간소화  
와 신속 처리, 효과적인 사업목  
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에  
협의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
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과 동  
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  
업을 통합하여 공고해야 한다.  
② 통합공고는 교육부, 산업통상  
자원부 및 통합사무국 홈페이지  
에 하되,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 
한다. 다만, 정책상 시급히 추진  
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 
우는 단축할 수 있다.  
③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 및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 
----- 산업통상  
부 및 관계부처에서 정한 사  
항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 
및 신청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산업통상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공고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통합공고는 -  
산업통상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③ -----

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통합사무국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특성화대학 등 지원사업 선정 등

제7조(지원사업 선정)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체 평가절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특성화 지원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선정한다.

----- 신청  
서를-----  
-----.

제4장 ----- 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

제7조(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선정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사무국의 장에게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자 중에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2.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
3. 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의 자

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

4. 첨단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산학연 전문가
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

③ 평가위원회는 제5조 각호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적정성을 검토한다

⑤ 통합사무국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신청요건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산업통상부 및 교육부 장관은 지정 및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.

제8조(선정결과의 제공) 교육부와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사업  
신청기관에게 최종 선정결과를 확  
정 통보한 후 2주 이내에 통합사  
무국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.

제5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

제9조(특성화대학 등의 지정) ① 산  
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성화대학  
등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 
통합사무국의 장에게 첨단특성화  
지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수  
있다.

② 지정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자  
중에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 
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  
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2.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서  
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
3. 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의 자

제8조(선정결과의 통보) 산업통상  
부 및 교육부 장관은 통합사무국  
에 최종 선정결과를 확정 통보하  
며, 통합사무국의 장은 이를 신청  
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9조(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고시)  
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부처  
장관과 협의하여 제8조에 따라  
선정 확정된 기관을 특성화대학  
등으로 지정하고, 이를 고시하여  
야 한다.

② 통합사무국의 장은 제1항에  
따른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  
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 
야 한다.

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

4. 첨단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산학연 전문가
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

③ 지정위원회는 동 지침 제6조제3항의 신청서 및 제8조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을 검토한다.

④ 통합사무국의 장은 지정위원회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특성화 대학등을 지정하고, 이를 고시해야 한다.

⑥ 통합사무국의 장은 제5항에 따

른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과  
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
다.

<신 설>

제10조(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취소)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거짓 또는  
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 등에  
지정된 경우에 관계부처의 장관과  
협의하여 동 지침 제9조 특성화  
대학 등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  
정을 취소한다.

제11조(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해지)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 
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
에는 동 지침 제9조 특성화 대학  
등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 
해지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3. 관계부처의 장관이 ‘중단’, ‘조기  
종료’, ‘완료’, ‘불성실수행’ 평가

제5장 ----- 지정 취소 및  
해지

제10조(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취  
소) 산업통상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7조 특성화대학 등  
의 지정 및 지원사업 대상 선정  
절차-----.

제11조(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해  
지) 산업통상부 -----  
----- 제7조  
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 
사업 대상 선정 절차-----  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지원사업 관  
련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지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등</u>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<br/>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정<br/>해지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4. 그 밖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<br/>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<br/>우</p> | <p><u>사업 목적 달성이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4. 그 밖의 사유로 <u>산업통상부</u> 장<br/>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<br/>우</p> |
| 제6장 특성화대학 등 지정 취소 및<br>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장 보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